

# 서울특별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119
----------	------

2023년 9월 8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8월 14일 최기찬 의원 외 31명
2. 회부일자 : 2023년 8월 21일
3. 상정일자 :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9월 6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 (최기찬 의원)

### 1. 제안이유

- 서울복지포털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서울특별시 등록 장애인 수는 391,859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의 4.1%이고, 그 중 뇌병변 장애인 수는 39,859명으로 10.2%에 달하고 있음.
-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뇌병변 장애인이 생애주기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해, 뇌병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삶의 질 향상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나.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라.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2023.08.24.~ 08.28.(의견없음)

###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 1 조례안의 개요

- 뇌병변장애인이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다양한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함.
- '22년 12월말 기준 서울시 등록장애인 수는 391,859명이며 이 중 뇌병변장애인은 39,859명으로 장애 인구 대비 1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뇌병변장애인 중 23,161명인 58.1%가 심한장애로 나타나고 있음.

〈표1〉 서울시 장애유형별 등록 장애인 현황

(단위:명)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391,859	164,464	40,991	61,995	3,421	27,634	39,859	7,491
100%	42%	10.5%	15.8%	0.9%	7.1%	10.2%	1.9%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16,546	18,883	998	2,156	2,715	385	3,087	1,234
4.2%	4.8%	0.3%	0.6%	0.7%	0.1%	0.8%	0.3%

-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2년 장애통계연보」』<sup>1)</sup>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정 장애 및 범주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전국 장애인 출현율<sup>2)</sup>'은 2014년 5.59%에서

1) 「2022 장애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2) 【전국 장애인 출현율】

- 장애출현율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9조에 규정에 근거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해 추정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분 통계]  
 - 전국 장애인 출현율은 가구표본조사와 행복e음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재가장애인과 시설에 거주하는 시설장애인을 합하여 산출한 것임. [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2022 장애통계연보」]

2017년 5.39%로 0.2%p 감소한 반면, 뇌병변장애의 경우 2014년 대비 2017년 출현율이 0.52%로 가장 많이 증가한 장애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음.

< 연도별 장애인 출현율 >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두·요추	뇌전증	중복장애
2011	5.61	2.72	0.59	0.51	0.50	0.04	0.28	0.01	0.23	0.10	0.04	0.04	0.02	0.00	0.03	0.02	0.48
2014	5.59	2.71	0.48	0.53	0.50	0.03	0.36	0.02	0.23	0.12	0.02	0.03	0.02	0.01	0.03	0.01	0.49
2017	5.39	2.51	0.52	0.51	0.52	0.03	0.38	0.03	0.22	0.15	0.01	0.02	0.02	0.01	0.03	0.02	0.42

주: 1) 2011년의 경우 사실 거주 장애인 중 중복 장애를 반영함

2) 2014, 2016년의 경우 계가장애인은 중복장애를 별도 산정하였으나, 시설장애인은 행복나눔을 통해 파악하여 중복장애에 대한 정보가 없어 한 가지 장애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함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2022 장애통계연보」]

- 또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sup>3)</sup>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고연령 장애인이 많았으며, 65~69세가 13.6%, 60~64세 13%, 70~74세 13.1%, 75~79세 11.8%로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51.5%)인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는 뇌병변장애인 중 과반 이상이 중증과 중복장애 및 만성질환자가 많아 생활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19~'23년)을 수립하여 4개 분야 10개 정책과제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이처럼 뇌병변장애인은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중복장애와 만성질환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그 필요성과 취지는 충분히 인정된다 하겠음.

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 제정안은 12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례안의 조문 배열〉

제1조(목적)	제8조(재정지원)
제2조(정의)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3조(시장의 책무)	제10조(교육·홍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포상)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시행규칙)
제6조(지원사업)	부 칙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등(안 제1조~제4조 관련)

- 안 제2조(정의)제1호는 “뇌병변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4)에 따른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2호의 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5)에 규정된 것을 의미함.
- 안 제3조(시장의 책무)는 시장이 수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정책집행을 유도하여 입법목적을 좀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 나. 기본계획의 수립 등 (안 제5조)

-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는 시장이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뇌병변장애인 추진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6)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

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1 2.뇌병변장애인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5)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기기 서비스”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

6)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각 시·도의 장애인정책 관련 기본계획 내지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는 법에서 위임하여 따로 규정한 사항은 없으나, 현재 서울시에서는 2019년에 5개년 계획으로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건강과 돌봄 등 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의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계획을 기 추진중에 있음.
-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에는 4대 분야 10개 정책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60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음.

## 〈표2〉 뇌병변장애인 대상 서울시 지원사업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6. 8.>

1.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교육문화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 26.]

구분	주요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내용 및 현황
이용 시설 지원	장애인복지관	서울시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li> <li>현재 서울시에 있는 뇌병변장애인 전용복지관은 2개임</li> </ul>
	직업재활시설	서울시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고용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들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서비스(보호고용, 직업적응훈련 등)를 제공하는 시설</li> <li>뇌병변장애인 전용 보호직업장은 1개임</li> </ul>
	비전센터	서울시 등록 성인 뇌병변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령기 이후 갈 곳 없는 성인 뇌병변장애인을 위해 교육, 돌봄, 건강관리를 종합 지원하는 전용시설</li> <li>뇌병변장애인들이 지역의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예정</li> </ul>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뇌병변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 있는 서울시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사소통이 곤란한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li> <li>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8년 1월에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li> <li>뇌병변장애인 등 4만여 명을 위한 특화된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li> </ul>
활동 지원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도전 행동을 가진 서울시 등록 성인 발달 및 중증 중복 뇌성마비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전 행동을 가진 성인 발달장애인 및 뇌성마비 중복장애인에 대한 낮활동 시범사업 운영 성과를 토대로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사업을 확대</li> <li>선발권과 서비스제공권 분리, 그간 시설에서 거부한 이용자 선정</li> <li>※ 이용자 선발(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서비스 제공(장애인복지관)</li> </ul>
일자 리 지원	중증장애인 인턴제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 단, 언어장애인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5년 최초로 서울시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행했으며, 중증장애인에게 인턴근무로 맞춤형훈련과 취업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더 나은 지역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li> <li>서울시(2020년 2월 기준)는 선발인원을 총 30명으로 정하여, 근무기간을 3월 2일~12월 31일으로 하여 참여기관의 기본사업, 선택사업, 특화사업 등 업무전반 행정업무 지원 등을 근무조건</li> </ul>
	권리증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서울시 등록 최중증 장애인 ※ 스스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장애인으로 특히 뇌병변장애, 척수 장애, 근육 장애, 언어 및 청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0년부터 스스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과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로 경쟁이 치열한 고용시장에서 일자리 참여 기회조차 얻기 힘든 최중증 장애인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의 기회'를 보장</li> <li>공공일자리 참여자는 지역사회와 장애인</li> </ul>



		시각 등 중복 장애인과 자폐가 심한 발달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지시설에서 주당 14~20시간 근무</li> <li>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해 ▲ 장애인 권익옹호 ▲ 문화예술 ▲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등 3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li> </ul>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서울시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생애주기별 취업상담·알선, 맞춤형 교육, 취업 전 현장훈련, 사후관리 등의 고용서비스 제공</li> </ul>
이동 지원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서울시 등록장애인 중 지체·뇌병변 1, 2급, 기타 휠체어 이용 장애인 1-2급 지체·뇌병변 3급인 임신부(산모 중 등 확인)는 병원 목적 이용 시에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지체·뇌병변 1-2급 장애인 및 기타 휠체어 이용 장애인 1-2급 중증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서울 장애인콜택시)을 운영</li> </ul>
	바우처택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 이용대상 중 비휠체어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반택시를 활용하여 이동할 경우 서울시가 요금의 75%를 지원하고 있음</li> </ul>
물품 및 보조 기기 수리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센터	서울시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으로 장애인의 활동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인보조기기센터를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에 각 1개소 총 4개소를 운영 상담/평가, 보조기기 임대, 맞춤제작 및 개조, 맞춤제작 재료비 지원(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90% 재료비 지원 그 외 80% 재료비 지원하나, 센터 내 맞춤제작 품목에 한함), 보조기기 지원, 소독/세척(동남센터: 5000원(전동세척기 사용) / 동북, 서남, 서북센터: 무료), ACC훈련프로그램, 견학 및 전시체험장 운영, 의복리폼 사업</li> </ul>

출처 : 윤민석,임상욱,이영주,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사회진출 지원방안」 (2020년), 서울연구원

- 본 조항의 기본계획의 내용은 서울시에서 기 수립하여 추진 중인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의 4대 분야인 맞춤형 건강지원 강화, 생애주기별 돌봄지원 강화, 특화서비스 및 인프라 강화,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등 4대 분야에 포함되어 있어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해당 조항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 지원사업(안 제6조)

- 안 제6조는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

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제1호), 자립생활 및 직업연계 지원(제2호), 평생교육 지원(제3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제4호), 가족의 휴식지원(제5호),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등 건강 증진지원(제6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제7호),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제8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제9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제10호)으로 규정되어 있음.

- 제정안의 지원 사업들은 기존 뇌병변장애인 마스터 플랜에 의해 여러 집행부서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며 이는 기존 서울시에서 뇌병변장애인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마.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7조 관련)

- 안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는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센터와 그 기능이 유사한 별도의 지원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센터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센터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는 뇌병변장애인에게 돌봄·교육·건강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1년 3월 마포구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를 개관으로 구로구, 노원구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를 추가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표4〉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 사업개요

- |  |
|--|
| ○ 사업내용 : 교육+돌봄+건강 →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
| - 필수교육: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독교육(의사소통), 건강관리, 직업능력 향상교육 등  |
| - 선택교육: 스마트폰 등 활용능력 증진, 감각활동, 맞춤형 요가 및 명상, 특수스포츠 등 |
| ○ 이용대상 :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15명 이상)  |
| ○ 이용시간 : 평일 09:00~18:00(실수업시간 10:00~16:00)         |
| ○ 지원방법 : 자치구 대상 공모·설치 및 운영비 지원                     |
| ○ 지원기준 : 설치비 3억원, 운영비 연 4.5억원(운영비 구비 10% 이상 매칭)    |
| ○ 소요예산('23년) : 1,650백만원(시비)                        |

## 〈표5〉 마포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2022년 실적

(단위: 건,회)

센터명	구분	총 계	개별지원	교육지원	돌봄지원	건강지원	가족지원	지역연계
마 포	횃수	4,994	521	2,092	1,578	668	5	130
	건수	41,350	667	19,338	17,446	3,417	48	434

- 이와같이 서울시에서는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를 설치·운영 지원하고 있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센터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표4〉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설치현황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설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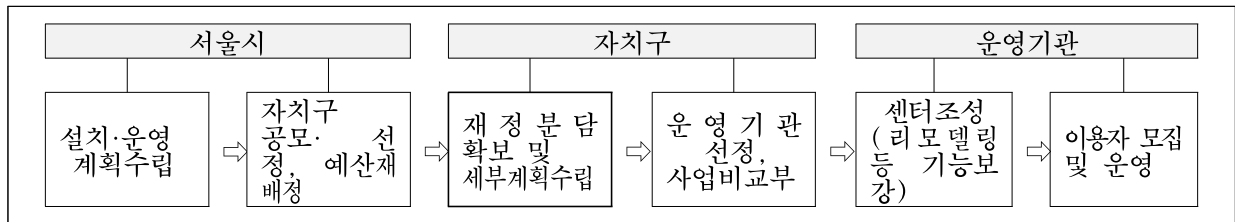
- 대상시설 : 4개소
- 시설개요

(단위:천원)

자치구	위 치	23년 예산액	위탁기관	개소시기
마포구	마포구 신촌로26길 10	450,000	(사단)기아대책	'21.3월 개소
구로구	구로구 구로동로 42길 43	450,000	(사단)한국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부모회	'23.3월 개소
노원구	노원구 한글비석로 432	450,000	(사북)엔젤스헤이븐	'23.5월 개소
서대문구	서대문구 가좌로75	-	-	'24.6월 개소예정

신규시설 공모절차

- 신청자격 : 자치구 중 센터 희망 자치구
- 설치기준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 지원예산 : 설치비 300백만원
- 추진방법



## 바. 집행부서의견 : 부결

- 집행부서인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는 기존 법령 및 조례의 범위 내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뇌병변장애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모든 유형(15종)의 장애인은 각자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서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개별 조례 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3 종합의견

- 뇌병변장애인은 언어장애, 지적장애, 시각장애 등의 중복장애와 통증, 탈골, 척추질환 등 만성질환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 장애 유형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의 비율이 높다 하겠음.
- 또한 중복장애와 높은 만성질환 발병률 등으로 건강, 고용, 일상생활 등 광범위한 삶의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미비하여 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필요하다 하겠음.
- 단, 장애별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조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행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기 시행중이며, 장애유형에 따른 개별조례 제정 시 다른 장애 유형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붙임 1

## 마스터플랜 추진목표('19~'23년)

번호	분야	사업명	단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b>4개 분야 26개 세부사업</b>									
1	맞춤형 건강 지원 강화	뇌병변장애 아동 등록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명	0	400	450	500	550	
2		뇌병변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확대	명	0	0	100	100	100	
3		최중증 뇌병변장애인 방문건강관리 확대	명	0	100	130	150	200	
4		뇌병변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강화	명	0	100	150	200	300	
5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확대	명	1,000	1,400	1,800	2,200	2,600	
6		장기입원 뇌병변장애인 간병인 지원확대	명	0	0	50	50	50	
7	생애 주기별 돌봄 지원 강화	뇌병변장애 영유아 사회,가정 활동 지원 강화	개소/명	0	1(50)	2(100)	3(150)	4(200)	
8		장애·비장애 통합 놀이방 설치·운영	개소	0	0	1	1	2	
9		뇌병변 장애 영유아 부모 동료 상담가 양성	명	0	10	25	35	45	
10		뇌병변 장애 청소년 및 청년 진로실험센터 설치·운영	개소	0	0	0	1	1	
11		뇌병변장애인 전용 작업장(직업재활시설) 확대	개소	1	0	1	1	1	
12	특화 서비스 및 인프라 확충	중증 뇌병변장애인 활동지원 가산수당 지원 확대	명	400	0	600	800	1,000	
13		뇌병변장애인 활동지원 교육과정 운영	명	0	1,000	2,000	2,000	2,000	
14		최중증 뇌병변장애인 낮활동 지원 확대	개소	4	4	4	4	4	
			명	20	25	25	25	25	
15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설치·운영	개소	0	2(2)	2(4)	2(6)	2(8)	
16		권역별 거점 뇌병변장애인복지관 지정,운영 확대	개소(누적)	2	5	5	5	5	
17		뇌병변장애인 긴급 및 주말 돌봄서비스 확대	뇌병변 전용단기거주시설	개소	0	0	1	1	1
			기초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명	50	100	200	300	400
18		뇌병변장애인 전용 주간보호시설 지정 확대	개소	0	0	1	1	1	
19		뇌병변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확대	개소	0	0	0	1	1	
	호		0	0	5	5	5		
20	뇌병변장애인 주거모형 개발·운영	공동생활주택	개소	0	0	0	1	1	
		지원주택	호	0	0	5	5	5	
21	뇌병변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 지원	명	0	100	100	100	100		
22	뇌병변장애인 관광 지원 강화	특장버스도입	대(누적)	2	3	5	7	7	
		무장애 관광 편의시설 확충	개소	50	50	100	100	100	
23	공공체육시설 무장애화 지원	개소	5	5	5	5	5		
24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	개소	0	1	1	1	1		
25	여성장애인 가구 홈헬퍼 지원 확대	명	170	190	210	210	210		
26	뇌병변장애인 돌봄가족 휴식지원 강화	명	432	441	450	459	459		

번호	분야	사업명	평가	단위	목표	실적	달성률	
4개 분야 26개 세부사업 : 23개 사업 평가 (※ 사업종료 3개 사업 제외)							86.1%	
1	맞춤형 건강 지원 강화	뇌병변장애 아동 등록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종료	명(누적)	500	-	-	
2		뇌병변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확대	정상추진	명	100	75	75.0%	
3		최중증 뇌병변장애인 방문건강관리 확대	정상추진	명	800	1,172	146.5%	
4		뇌병변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강화	정상추진	명	150	545	363.3%	
5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확대	정상추진	명(누적)	1,400	1,483	105.9%	
6		장기입원 뇌병변장애인 간병인 지원확대	사업종료	명	50	-	-	
7	생애 주기별 돌봄 지원 강화	뇌병변장애 영유아 사회,가정 활동 지원 강화	정상추진	개소(누적)	2	2	100.0%	
			정상추진	명	750	982	130.9%	
8		장애·비장애 통합 놀이방 설치·운영	미흡	개소	1	-	-	
9		뇌병변 장애 영유아 부모 동료 상담가 양성	정상추진	명	10	10	100.0%	
10		뇌병변 장애 청소년 및 청년 진로실험센터 설치·운영	미흡	개소	1	-	-	
11		뇌병변장애인 전용 작업장(직업재활시설) 확대	미흡	개소	1	-	-	
12	특화 서비스 및 인프라 확충	중증 뇌병변장애인 활동지원 가산수당 지원 확대	사업종료	명	800	-	-	
13		뇌병변장애인 활동지원 교육과정 운영	정상추진	명	3,000	3,200	106.7%	
			미흡	개소	3	-	-	
14		최중증 뇌병변장애인 낮활동 지원 확대	정상추진	개소	5	5	100.0%	
			정상추진	명	26	24	92.3%	
15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설치	미흡	개소	2	1	50.0%
			운영	미흡	개소	6	1	16.7%
16		권역별 거점 뇌병변장애인복지관 지정,운영 확대	정상추진	개소(누적)	5	4	80.0%	
17		뇌병변장애인 긴급 및 주말 돌봄서비스 확대	뇌병변 전용 단기거주시설	미흡	개소	1	-	-
			기초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정상추진	명	560	405	72.3%
18	뇌병변장애인 전용 주간보호시설 지정 확대	정상추진	개소(누적)	1	1	100.0%		
19	뇌병변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확대	정상추진	가구	110	100	90.9%		
20	뇌병변장애인 주거모형 개발·운영	공동생활주택	미흡	개소	1	-	-	
		지원주택	미흡	호	5	3	60.0%	
21	지역 사회 참여 활성화	뇌병변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 지원	정상추진	명	10	10	100.0%	
22		뇌병변장애인 관광 지원 강화	특장버스도입	정상추진	대(누적)	7	7	100.0%
			무장애 관광 편의시설 확충	정상추진	개소	50	60	120.0%
23		공공체육시설 무장애화 지원	정상추진	개소	5	11	220.0%	
24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	정상추진	개소(누적)	1	1	100.0%	
25		여성장애인 가구 홈헬퍼 지원 확대	정상추진	명	170	138	81.2%	
26	뇌병변장애인 돌봄가족 휴식지원 강화	정상추진	명	454	319	70.3%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 요지

1. 수정이유

- 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센터가 기존 존재하여 안 제7조를 삭제하기로 수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안 제7조에 관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V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119
----------	------------

제안연월일 : 2023년 9월 6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1. 수정이유

- 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센터가 기존 존재하여 안 제7조를 삭제하기로 수정함.

## 2. 주요내용

- 안 제7조에 관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 서울특별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에 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뇌병변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 장비로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뇌병변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생애주기별 성장발달 지원을 통한 자립 역량 증진에 관한 사항
3.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건강지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2. 자립생활 및 직업연계 지원
3. 평생교육 지원
4.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5. 가족의 휴식지원
6.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등 건강 증진 지원
7.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8.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9.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뇌병변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교육·홍보)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사업 및 신문, 방송,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뇌병변 장애인의 권익향상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